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8,829,141	13,164,874
일반회계	389,494,317	11,684,830
특별회계	49,334,824	1,480,045
공기업특별회계	13,527,019	405,81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527,019	405,811
기타특별회계	35,807,805	1,074,234
수질개선 특별회계	15,787,908	473,637
주택사업 특별회계	4,139,158	124,175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35,957	22,079
자활기금 특별회계	1,886,105	56,583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0,613,598	318,408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97,602	32,928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1,243	13,537
기반시설 특별회계	33,084	9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063,150	31,895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60,09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